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4 발의연월일: 2020. 10. 14.

발 의 자 : 임이자 · 윤영석 · 권명호

이종성 · 송언석 · 정진석

김정재 · 서일준 · 김영식

구자근・金炳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환경현안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해결방법도 여건에 따라 상이함. 따라서 현장 중심의 원인 분석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1998년에 녹색환경지원센터 2개소가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 9월 기준,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환경조사 및 기술개발, 환경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교육 등 성과도 있지만 일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센터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에 현장 중심의 센터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환경 관련 인· 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 제공'을 센터의 수행업무로 명시하고, 예산 외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 근거를 신설하며, 센터 수가 18개로 증가함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성과관리 및 확산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제6항 신설, 제1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조사·연구, 환경기술 개발,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녹 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전국 단위의 녹색환경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2.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3.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 4.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 5. 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 홍보사업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 ③ 그 밖에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과 제10조의3의 개 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생 략)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1
위한 <u>조사·연구 및 환경기술</u>	<u>조사·연구,</u> 환경기술 개
<u>개발사업</u>	발,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
	<u>사업</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
	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u>6</u> . 제1호부터 <u>제5호</u> 까지의 사업	<u> 7</u> <u>제6호</u>
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u>7</u> . (생 략)	<u>8</u> .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

<신 설>

경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 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 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중앙녹색환경지원 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 단위의 녹색환경지원센 터 네트워크 구축・운영

- 2.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 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 을 위한 사업
- 3.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 로그램의 개발
- 4.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 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 5. 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 홍보 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
	동 발전을 위한 사업
	③ 그 밖에 중앙녹색환경지원센
	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제10조의3</u> (생 략)	<u>제10조의4</u> (현행 제10조의3과 같
	호 :